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전략

(2021~202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 인권증진행동전략의 개요	1
1. 수립 배경	3
2. 추진 경과	4
3. 인권증진행동전략의 구조와 의미	5
II. 인권증진행동전략의 방향	7
1. 제1~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9
2. 인권 환경	12
3.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 추진 방향	18
III. 인권증진행동전략의 체계와 내용	21
1. 비전과 사명	23
2. 3대 전략목표와 21대 성과목표	23
IV. 성과목표 세부 내용	25
V. 체계도	61

01



인권증진행동전략

인권증진행동전략의 개요



I. 인권증진행동전략의 개요

1 수립 배경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중장기적 업무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권증진행동계획’이란 명칭의 3개년 중기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한 이래, 5차례(제1기: 2006~2008, 제2기: 2009~2011, 제3기: 2012~2014, 제4기: 2015~2017, 제5기: 2018~2020)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수립해 왔음
- 위원회는 인권증진행동계획을 통해 지난 15년 간 위원회의 비전과 사명, 전략 목표와 성과목표를 대내외에 명확히 제시하였고, 위 계획을 기반으로 연간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음
- 위원회는 2021년 설립 20주년을 맞아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장점을 계승하면서 유연성, 전략성, 업무 균형성, 유사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목표설정체계인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을 수립함
 - 유연성 : 인권증진행동계획은 수립이후 환경 변화에도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으나, 인권증진행동전략은 수정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수정을 검토한다는 전제 하에 수립함
 - 전략성 : 인권증진행동계획은 비전, 사명, 전략목표, 성과목표와 함께 관리과제를 제시(예시)했으나, 인권증진행동전략은 성과목표까지만 제시하고 관리과제는 매년 연간업무계획 지침을 통해 제시(예시)함
 - 업무 균형성 : 인권증진행동계획은 위원회 업무 중 정책업무 중심으로 수립됨에 따라 조사업무나 기획·지원업무는 제외되었으나 인권증진행동전략은 위원회 업무를 균형적으로 반영
 - 유사계획과의 연계성 : 인권정책분야의 경우 5년마다 정부에 권고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인권증진행동전략에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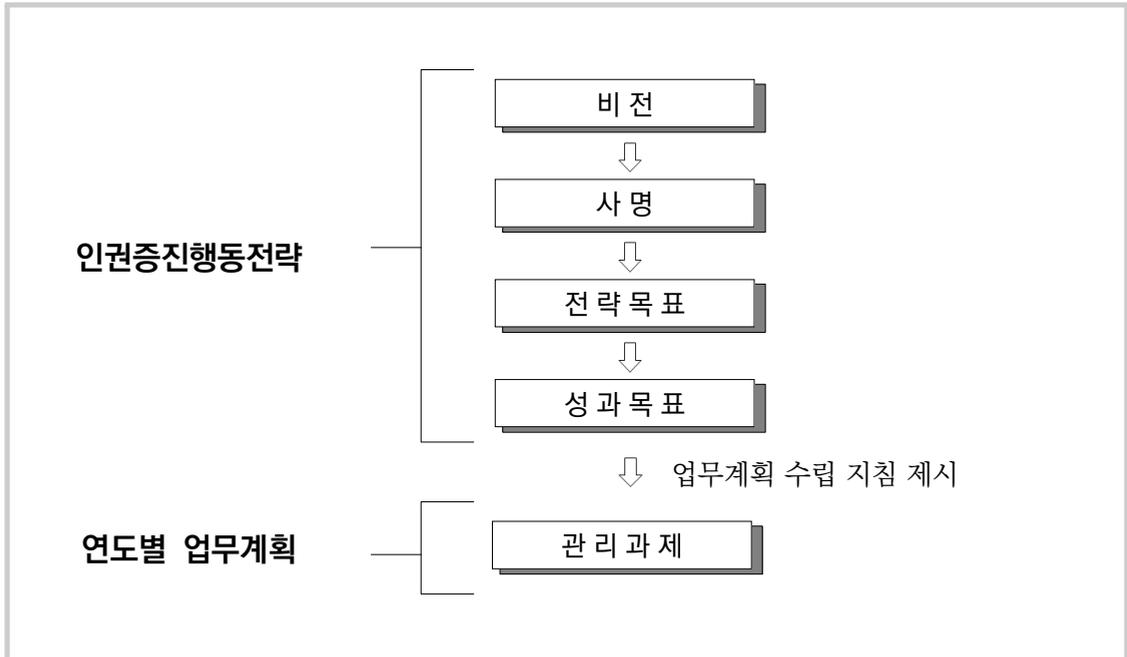
2

추진 경과

- 20. 3. 5. 위원회 목표 설정 방식 개선 방안 수립(위원장 보고): 평가제도 개선방안과 병행 검토
- 20. 3. 13. 위원회 목표설정 방식과 평가제도 개선방안 부서 의견조회
- 20. 5. 12. 위원회 업무평가 지표 작성요청(5.22. 까지)
- 20. 8. 7. 위원회 업무평가 계획 확정
- 20. 9. 10. 위원회 목표설정 체계 개선방안 상임위원회 심의
- 20. 9. 14. 위원회 목표설정 체계 개선방안 전원위원회 의결
- 20. 9. 17. 인권증진행동전략 실무추진팀(TF) 구성, 1차 회의
- 20. 9. 18. 인권증진행동전략 기초검토안 확대간부회의 검토
- 20. 9. 22. 상임위원 간담회(1차, 기초검토안 검토)
- 20. 9. 24. 인권증진행동전략 실무추진팀 2차 회의
- 20. 9. 25. 수립 방향 대국민·시민단체 의견수렴(10.12. 까지)
- 20. 10. 20. 상임위원 간담회(2차, 초안 마련)
- 20. 10. 21. 정책자문위원회, 차별시정전문위원회 초안 검토
- 20. 10. 27. 상임위원 간담회(3차, 초안 확정)
- 20. 10. 27. 인권증진행동전략 실무추진팀 3차 회의
- 20. 10. 28. 초안 인권위원 회람
- 20. 10. 28. 초안 사무처 부서별 의견수렴(11. 6. 까지)
- 20. 10. 28. 초안 대국민·시민단체 의견수렴(11. 6. 까지)
- 20. 11. 5. 시민단체 간담회
- 20. 11. 17. 상임위원회 심의
- 20. 11. 23. 전원위원회 의결

3 인권증진행동전략의 구조와 의미

◆ 인권증진행동전략의 구조 및 연도별 업무계획과의 연계



◆ 용어의 의미

- 비 전 : 위원회가 추구하는 이상
- 사 명 : 계획 기간 동안 위원회가 추구할 방향
- 전략목표 : 비전, 사명 구현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구할 가치
- 성과목표 : 추상적인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제이자 하위 목표로서 위원회 연간 업무계획을 견인
- 관리과제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과제로 연간 또는 다년간(계획 기간 내) 수행

※ 위원회 목표설정 체계 변경 사항

구분	인권증진행동계획	인권증진행동전략	연간업무계획 수립지침
수립 주기	3년	NAP권고(의견표명)안 수립시기와 연계를 원칙으로, 필요시 유연한 수립	1년
수립 과정	<p style="text-align: center;">추진단 구성 (외부 전문가 위주)</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계획 초안 수립 (추진단)</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내외부 의견수렴</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계획 확정 (전원위 의결)</p>	<p style="text-align: center;">초안 작성 (내부 추진단)</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내외부 의견수렴</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계획 확정 (전원위 의결)</p>	<p style="text-align: center;">부서의견 취합</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수립 지침 작성 (기획재정담당관)</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내외부 의견수렴</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수립 지침 확정 (위원장 보고)</p>
수립 내용	<p>인권증진행동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 사명 · 전략목표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특별사업 · 기획사업 <p style="text-align: center;">↓</p> <p>연간업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제(추가) · 과제별 목적, 내용, 결과, 일정, 예산 	<p>인권증진행동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 사명 · 전략목표 · 성과목표 	<p style="text-align: center;">↓</p> <p>연간업무계획 수립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과제 예시 · 업무계획 수립방향 (수립원칙, 강조점, 지양점 등) 설정 <p style="text-align: center;">↓</p> <p>연간업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과제(작성) · 과제별 목적, 내용, 결과, 일정, 예산

02



인권증진행동전략

인권증진행동전략의 방향



II. 인권증진행동전략의 방향

1 제1~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 ① 위원회는 매 인권증진행동계획 수립기마다 그 시대의 인권 현안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위원회 내부는 물론 외부의 다양한 활동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이에 인권증진행동계획에는 수립 당시의 인권 현안과 내외부 환경, 위원회의 소명과 고민이 담겨있음
- ② 제1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06~2008)은 위원회가 설립된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립되었음. 위원회의 업무 체계가 정착하는 단계에서 수립된 계획으로, 다수 목표가 내부적인 체계 구축과 역할 강화를 지향하고 있음. 그 예로는 ‘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한 체계 정비’, ‘지역사무소 확산 및 역할 강화’, ‘맞춤형 인권 상담 체계 구축’, ‘소송 지원체계 구축’, ‘인권 의제 발굴 체계 확립’, ‘인권 친화적인 조사구제 절차 및 기법 개발’, ‘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이 있음
- ③ 제2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은 국제적 맥락에서 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음. 제2기 계획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를 실현한다.”는 미션 아래, 성과목표 설정 시 4대 외부 환경(1.유엔, 2.국가인권기구 국제네트워크, 3.입법·사법·행정, 4.시민사회) 중 두 가지를 국제적인 환경에서 반영하였음. 전략목표 수립 시에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인권 법제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 특히 유엔이 제시한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향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고 이는 인권전담 국가기구의 존재이유이자 핵심사명’이고,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각종 국제인권조약 이행모니터링 기구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향후 3년간의 우선적 과제’라고 하며 업무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음

- ④ 제3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2~2014)은 2009년 위원회 조직 축소 이후 수립된 중기 계획임. 조직 축소의 여파를 반영하듯 인권 환경의 첫 화두로 ‘위원회의 조직 축소 및 정원 감축’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음.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갈등, 다문화 등 새로운 인권 환경 속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략목표 단위에서 ‘차별시정 강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등을 설정하는 한편, 위원회 조직 축소 이후 위축되었던 진정사건 조사, 기획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하나의 전략목표로 삼았음
- ④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은 위원회의 4대 핵심기능(정책, 조사, 교육, 홍보·협력) 및 기본권 영역, 보호 대상을 포괄하여 작성되었음. 조사 기능을 제외한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20개 성과목표 중 3개를 인권교육에 할애(‘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기능 확대’,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강화’,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하며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추진을 중심으로 인권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한편, 제4기 계획에 이르러 인권증진행동계획은 성과 관리계획으로서의 성격이 한층 강화되었음. 각 성과목표에 담당부서를 명기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이행점검 방안까지 표현하도록 하는 등 계획과 실무의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④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은 포괄적인 목표설정을 지양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한 것이 특징임. 장애인권 분야에서는 ‘탈시설’을 성과목표의 화두로 제시하였으며(장애인 등의 탈시설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사회권 영역에서는 ‘의료체계 공공성’이 전략적으로 제시되는 등(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성과목표를 구체화하였음. 제5기 계획은 전략목표 수준에서도 4대 성과목표를 2대 핵심 전략목표(I.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II.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와 추가 전략목표(III.지속 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IV.인권의 확장파 다원화)로 구분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모색하였음

※ 제1~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비교

계획 기간	계획 체제	특징 및 중점 요소
제1기 (2006~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목표 • 14대 세부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업무 정착기에 수립. 업무 체계 구축과 역할 강화 목표가 다수
제2기 (2009~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전략목표 • 20대 성과목표 • 특별사업 1개 • 기획사업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에서 위원회 역할 강화를 강조 • 비전-사명-전략목표-성과목표 체계 확립
제3기 (2012~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전략목표 • 23대 성과목표 • 특별사업 1개 • 기획사업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축소 이후 수립된 중기 계획. 부족한 인적·물적 여건 속 ‘세대 갈등’, ‘다문화’ 등 새로운 인권 환경 속 역할 고민
제4기 (2015~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전략목표 • 20대 성과목표 • 특별사업 1개 • 기획사업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등 교육 관련 목표 확대 • 계획과 실무의 연계 강화 노력 뚜렷
제5기 (2018~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전략목표 • 19대 성과목표 • 특별사업 1개 • 기획사업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권 강화와 차별해소를 2대 핵심 목표로 • 구체성 있는 성과목표 중심의 계획 수립

◆ 코로나19와 포스트코로나시대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생명·안전의 위협과 사회·경제적 위기를 경험하였음. 한편으로 코로나19는 일상에 존재하던 인권문제를 더욱 확연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음. 재난상황에서 개인, 특히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가 드러났고, 그간 확인되지 못했던 인권의 사각지대도 노출되었음.
- 코로나19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종식될지는 현재 예측하기 어려우나,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 어렵고, 사회적 변화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 및 그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고, 갑작스럽게 다가온 재난 상황에서 인권의 원칙과 기준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양극화와 빈곤 문제 심화

-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사회의 지니계수(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 및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낮을수록 균등한 소득 분배를 의미)은 큰 변동이 없거나 하락 추세로, 지표만으로 볼 때 양극화의 심화는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소득 분배 관련 주요 지표 추이 》

분배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니 계수	0.388	0.385	0.372	0.363	0.352	0.355	0.354	0.345
소득 5분위 배율	8.32	8.10	7.68	7.37	6.91	6.98	6.96	6.54

- 그러나 2018년 기준 귀속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2만3000여명의 소득은 하위 26% 구간에 속한 627만 명의 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사회 소득 양극화 수준은 심각한 상태임.
- 소득의 양극화는 개인의 교육, 건강, 주거, 환경, 의료, 그 외 자기 발전과 문화 향유의 양극화를 파생시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포용복지와 건강 정책의 방향 보고서(2019)에 따르면, 기준 소득 5분위의 기대수명이 85.1세인 반면, 1분위의 수명은 78.6세에 불과함.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2017)에 따르면 교육을 매개로 한 경제적 불평등의 재생산 구조는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상태임.
- 빈곤은 그 자체로 차별과 혐오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문제는 양극화 상황에서 더욱 심화됨. 따라서 빈곤과 양극화는 사회적 문제이기 이전에 인권의 문제임.

◆ 차별과 혐오문제의 심화

- 우리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기본권 보장의 핵심원리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 관행과 잠재적 차별요소들이 개인의 기본권 향유와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있음.

- 근래 한국사회는 일상생활 전반에서 혐오표현의 확산을 경험하여 왔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인종, 출신국가, 출신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심각한 혐오표현 및 차별을 목격하였음.
- 이 같은 상황에서 차별과 혐오표현의 심각성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위원회가 2020년 4월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나, 그리고 나의 가족도 언제든지 차별을 받거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10명 중 7명이 ‘차별 문제를 이대로 두면 사회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10명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이에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문제를 해결하고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평등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고 입법을 위한 지원 활동을 개시하였음.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요구 지속

- 유엔 인권조약기구는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사 및 최종견해, 후속보고서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음. 국제사회의 요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 등 입법에 대한 권고에서부터, 사형제 폐지 등 현행 법률 조항 개선, 정책의 도입 또는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남. 이에 따라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음.
- 또한 미비준 조약, 조약의 선택의정서, 협약 등에 대한 비준을 통해 국제 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국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UN인권조약기구 및 UPR 주요 권고 관련 향후 과제 》

구 분	향후 과제(불수용 권고 사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8년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차별 금지입법화(차별금지법) 및 형법 개정 •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 제정 • 보편적 출생등록제 실시 • 국적과 관계없는 사회보장정책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2017년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결사의 자유,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2015년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과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 사형제도 폐지 • 공무원 등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자유권 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 철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8년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협약 제16조 제1항 g호(부부의 동일한 권리 보장) 유보철회 • 피해자 동의 여부를 중점으로 형법 개정 •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 제정 • 인공임신중절 합법화 및 비범죄화
고문방지위원회 (2017년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 정의 형법에 명시 및 고문 공소시효 폐지 •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 •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 제2선택의정서 비준 고려
아동권리위원회 (2019년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금지법 제정 • 온라인 그루밍 불법화 • 우범소년 규정 폐지 등 소년법 개선
장애인권리위원회 (2014년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 금지) 폐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제 폐지 • 정신장애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폐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2017년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 사회권규약·고문방지협약·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 국가보안법 개정 등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혐오표현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입법과 정책 시행

- 한편, 유엔은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였음.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2030)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 지구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사회문제(주거, 노사, 고용, 생산소비, 사회구조 등) 해결을 위한 17가지 주목표, 169개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 193개국 정상들이 이에 서명하였음.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내적으로 SDGs와 연계한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도 주요한 과제임.

◆ 다양한 인권옹호활동의 대두

- 위원회는 오랜 기간 지역 인권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음. 그 결과 2019년 기준으로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인권조례가 모두 제정되었으며, 기초지자체 226개 중 95개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었음. 15개 광역지자체에서 인권업무 전담자가 지정되고, 인권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 중이며, 14개 광역지자체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에 현재 시점에서 지역 인권의 제도적 확립을 위한 양적 목표는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집단들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음. 시민사회의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아동권리보장원 등 다양한 기관이 등장하여 각 분야에서 활동 중임. 많은 대학 내에 인권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육군, 해군 등도 최근 자체적인 장병 인권 구제전담조직을 구축하였음. 스포츠계의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2020년 운영에 들어갔으며,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 내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활발한 상황임.
-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 인권 보호와 증진의 폭을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향후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들과 협력하고 때로는 선도하며 적극적으로 협력적·보완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20년, 새로운 도약과 독립성 강화

- 2021년 위원회는 설립 20주년을 맞이함. 이제 우리 사회는 단순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넘어, 위원회가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높은 유능함과 책임감을 발휘할 것을 기대할 것임
- 위원회는 앞으로 평등법 제정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더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군인권보호관 설치, 인권교육원 설립, 인권교육지원법 입법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또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업무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재난과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선제적 인권보호 노력 강화

- ① 코로나19를 포함한 팬데믹·재난상황에서의 인권 보호는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보호할 인권의 영역 및 성격도 다양함. 최근 대두하는 기후위기 또한 환경적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및 생계에 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사안임. 따라서 개별 인권영역에서의 노력 뿐 아니라, 전 사회적 관점에서 이를 연구·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 ② 재난과 기후위기 뿐 아니라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사회 현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양극화, 고령화와 같이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변화와,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가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변화 속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최소한의 인권기준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 ① 그간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협력의 결과로 위원회는 GANHRI* 집행이사회 APF** 대표,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 APF 부의장 등을 수임하였고,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인권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GANHRI : 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APF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향후에는 국제인권규범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권고가 국내에서 더욱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와 감시를 강화하고, 미가입 협약 등의 가입을 촉진하여 국제인권규범이 우리 사회에 더욱 공고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오랜 국제사회의 요구였던 평등법 입법을 지원하는 등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각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정부에 제시하는 인권 보호·증진 방안이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기준이 되고, 실생활에서 작용되도록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위원회 20년, 새로운 도약과 역할 강화

- 위원회 설립 20년을 맞이하는 2021년은 위원회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임.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권정책, 조사구제, 인권교육, 국내외협력 등 기본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인권옹호자들과 함께 적극적 협력관계를 모색하며 인권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인권증진 업무를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고, 향후 사회 각 분야의 인권보호체계 확립, 인권진단과 모니터링, 평가 등을 추진하여 사회 전반의 인권수준을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인권증진행동전략의 체계와 내용



Ⅲ. 인권증진행동전략의 체계와 내용

1 비전과 사명

-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사명 : 모든 사람의 존엄, 평등, 자유가 보장되는 인권사회 실현

2 3대 전략목표와 21대 성과목표

I. 급변하는 인권환경과 지구적 재난·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

1. 재난상황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2.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3.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인권 보호
4.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
5.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
6. 스포츠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인권 강화
7. 북한인권 개선 강화

II.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

1.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및 혐오표현 대응
2. 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난민 인권보호
3.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
4.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사회참여 증진
5.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
6. 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개선
7.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

III.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

1.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2.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
3. 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거버넌스 강화
4.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역량 강화
5. 군 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6. 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
7.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



성과목표 세부 내용



I-1

재난상황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 추진 배경

-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언제 어떤 형태로 종식될지 예측하기 어려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다른 대규모 감염병 출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코로나19를 교훈삼아 감염병 확산 및 기타 재난상황에서 준수되어야 할 인권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 이상기후로 인한 영향은 점점 광범위해지고 그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음.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요소임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음
-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그 외 대규모 재난상황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 연구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

○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코로나19 및 포스트코로나사회에서의 인권보호는 물론 기후위기 및 천재지변 등 재난상황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성과목표를 설정

◆ 추진 방향

- 코로나19 및 포스트코로나사회에서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 기후위기, 천재지변 등 재난상황에서의 인권보호 방안 마련
- 재난상황에서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 및 대응 모니터링

I-2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 추진 배경

-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소득의 양극화는 그 자체로 빈곤과 소외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교육, 건강, 주거, 환경, 의료, 그 외 자기 발전과 문화 향유의 양극화를 파생시킴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주로 저소득층 및 노동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었음을 감안할 때, 소득의 양극화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개별 영역에서의 양극화는 향후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의 포괄성과 보편성이 보장되도록 인권적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

○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빈곤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되, 소득 양극화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를 성과목표로 설정

◆ 추진 방향

- 소득 양극화 및 빈곤문제 대응방안 마련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과 사회보장 체계 강화 방안 마련

○ 추진 배경

- 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가 급격히 도래함. 새로운 산업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등 긍정적 영향과 동시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 부정확한 정보 범람과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② 4차 산업혁명은 정보를 핵심 동력으로 삼으며,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보의 생산, 축적, 활용 수요가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특징이 있음. 반면, 정보 보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정당하지 못한 정보의 수집·활용 동기가 높아지는바, 정보주체의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③ 산업분야 외에도, 수사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시스템 추적, 기지국 수사와 패킷감청, 통신제한조치 등 국가권력에 의한 감시·통제와 정보인권 침해도 제기되고 있음.
- ④ 2017년 10월 대통령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하였으나 과학기술 발전 지원,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등에 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① 기존의 정보인권 보호 필요성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설정

◆ 추진 방향

- ④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 이슈 발굴과 법령, 제도, 관행 등 개선 방안 마련
- ④ 정보보호 취약계층 보호 방안 마련과 정보인권 보호 및 증진 체계 구축

I-4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

○ 추진 배경

- 통상 고령화의 단계를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로 구분함. 우리나라는 2017년에 노인인구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경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국 노인의 상당수가 빈곤, 자살,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노년에 최소한의 삶의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더하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한국사회는 노인인구의 비율 증가에서 오는 새로운 인권환경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음.
- 노인인구의 비율 증가는 사회구조 변화에서 오는 세대 간 갈등, 부양 시스템 악화 및 불충분한 수급 등 문제를 새롭게 발생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취약계층으로 몰리는 빈곤층 노인을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노인 인권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노년의 존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인권적 차원의 대안 마련과 노인빈곤 등 노인 인권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를 성과목표로 제시

◆ 추진 방향

- ① 사회구조적 변화와 연관된 노인인권 현안 발굴 및 대응
- ② 노인 빈곤, 소외, 학대, 건강, 교육 및 사회활동 등과 관련된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 강화

I-5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

○ 추진 배경

- 헌법상 명시된 노동3권과 근로의 권리,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다수 존재함.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문제가 여전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환경은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는 기회인 동시에 노동 대체에 따른 대규모 해고 및 임금 수준 감소, 노동환경 악화 및 노조의 협상력 저하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이 외에도 디지털화 플랫폼화 등 최근의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노동인권의 보호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음
- 한편, 유엔 등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인권경영 실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입법 등을 꾸준히 권고하고 있음. 그럼에도 유엔 사회권규약 위원회 제4차 심의 후 제출된 우리 정부의 후속보고서가 ‘기업의 인권실천·점점의 법적 의무화 진전이 불충분하다’는 평가 받는 등 우리 사회의 인권경영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위원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견인하면서 유엔 등에서 권고하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구속력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노동양극화와 노동취약계층 보호,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존의 대응 외에,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산업구조 아래에서의 새로운 노동인권 보호 필요성을 조명할 필요가 있음

- ④ 또한, 그간 위원회는 인권경영의 실천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규모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바, 향후에는 이와 같은 확산과 더불어 경영 전반에 인권이 원칙으로 자리할 수 있는 실질적 정착도 추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성과목표를 설정함

◆ 추진 방향

- ④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3권 보장 방안 마련
- ④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환경 개선 방안 마련
- ④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
- ④ 인권경영의 내실있는 실천 및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
- ④ 인권경영포럼 및 다각적 협력을 통한 인권경영 공감대 확산
- ④ 기업과 인권 NAP 수립 유도

I-6

스포츠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인권 강화

○ 추진 배경

- ① 2019년 1월 유명 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스포츠계 인권침해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대두함. 이에 위원회는 2019년 2월 이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발족을 통해 광범위한 조사와 구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쳐 옴.
- ② 우리 위원회 외에도 스포츠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련부처, 스포츠계 내부 등 각 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위 선양을 위한 국가 주도 스포츠,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가 변혁을 요구받고 있음
- ③ 이러한 스포츠 변혁기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권의 침해 등을 예방하고, 스포츠인권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시점임.

○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① 2020년 스포츠계의 권리구제 등을 담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활동에 들어감. 그러나 범정부 차원의 스포츠인권환경 패러다임 전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조사와 구제 등은 우리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② 이에 스포츠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환경 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운영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성과목표를 설정함

◆ 추진 방향

- ① 범정부적 스포츠인권 증진 방안 마련
- ② 스포츠인권 분야 조사·구제활동의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
- ③ 스포츠분야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방안 마련

I-7 북한인권 개선 강화

○ 추진 배경

- ① 국제사회의 우려와 적극적 개입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하지 않고 있고, 북한인권 수준의 가시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② 2020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살포를 강행하는 단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찬반 여론이 형성되는 등, 북한 및 북한인권 대응방식에 대한 사회적 견해 대립은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
- ③ 북한 관련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의 적극적 북한인권 보호·증진 조치에 대한 요구와 기대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최근의 사회적 견해 첨예화 등을 위기로 인식하고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① 북한인권 수준의 가시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증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 등 가능한 영역에서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바, 이를 성과목표에 표현함

◆ 추진 방향

- ①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현안 대응
- ② 북한인권포럼 운영 활성화
- ③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등 환경 조성

II - 1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및 혐오표현 대응

○ 추진 배경

- ① 위원회는 2020. 6. 30. 국회에 조속히 평등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이후 관련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거나 발의 준비 중임. 일부 종교계의 반대가 있으나 그간 지속되어온 국제사회 요구와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
- ②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경제적 위상만큼 이제는 우리 사회가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각 분야에 남아있는 차별관행과 잠재적 차별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평등법은 제정 과정 그 자체로도 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임.
- ③ 한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혐오표현에 대하여 유엔이 전략계획을 발표(2019)하고 각 국가가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수준임.
- ④ 특히 코로나19 전파 과정에서 인종, 출신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 확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① 평등법 입법 전후 과정은 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을 감안하여 이를 성과목표에 표현함. 또한 개별 법령·제도 개선 활동도 목표에 포함하여 평등법 제정 외의 활동도 목표 내에 포섭할 수 있도록 함

- ① 한편 갈수록 심화되는 혐오표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성과목표로 설정함

◆ 추진 방향

- ① 평등법 제정과정에 적극적 참여, 평등법의 이해 제고를 위한 해설서 제작, 평등법 제정과정과 이행과정 모니터링 등 후속조치
- ② 개별 법령·제도·정책·관행에서의 차별적 요소 발굴 및 개선, 대응
- ③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국내외협력 강화 및 제도화 방안 모색
- ④ 혐오차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영역별 자율대응 규범 마련 및 확산
- ⑤ 교육·홍보·캠페인 등을 통한 혐오표현 대항 역량강화

II-2

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난민 인권보호

○ 추진 배경

- ① 2019년 말 기준 국내체류 외국인은 252만 명임. 법무부는 2011~2015년 국내체류 외국인이 연평균 8%씩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2021년에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5.82%가 될 것으로 예상함.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7%를 웃도는 수치임.
- ② 이주민 인구 증가에 따라 이주민과 비이주민 간 갈등이 잠재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 등에서 제기되고, 각종 조사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우려되는 상황
 - ※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2015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주자들이 한국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답한 비율이 ('03) 53.9% → ('15) 44.9%, “이주자들이 범죄율을 높인다.”고 답한 비율이 ('03)33.1% → ('15)46.6%
- ③ 활발해지는 국제 이주의 추세 속에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이주민과 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① 최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악화와 이주민 증가에 따른 집단 간 갈등 우려를 고려하면, 향후 조사구제 및 정책기능을 통한 차별 해소 뿐 아니라 인식 개선을 통한 차별 예방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성과목표를 설정

◆ 추진 방향

- ① 이주민 차별 해소 및 인권침해 예방 강화
- ② 이주민들의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 등 기본적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기능 활성화
- ③ 다문화 복지사회 진입을 위한 이주민들의 문화 정체성 존중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개선 방안 마련

II-3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

○ 추진 배경

- ① 유엔 등 국제사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제반 의무를 조속히 실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2018. 11. 8. 정부가 제출한 제4차 심의 후속보고서 중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부분에 대하여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부여한 바 있음.
- ② ‘성희롱’이 범제화 되어 규제대상이 된 지 20년이 경과한 지금도 여전히 성희롱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혐오·차별실태는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성소수자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시점임. 이에 여성인권관련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촉진과 성차별, 성희롱 및 성적 지향 등 성평등 관련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① 그동안 위원회는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음에도, 성과목표는 성희롱·성폭력 시정 등을 중심으로 표현되어 온 측면이 있었음
 - ※ 제2기 : 여성 인권 보호
 - 제3기 : 성차별 시정 강화,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
 - 제4기 : 성차별 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 제5기 : 성차별 해소, 성희롱 성폭력 예방·관리구제
- ② 이에 금번 계획에서는 모든 성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 해소를 염두에 두며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을 성과목표로 설정함

◆ 추진 방향

- ④ 성희롱, 성차별 예방 및 실효적 구제조치 마련
- ④ 성평등관련 국제인권규범 이행과 모니터링 강화
- ④ 성차별, 성희롱 및 성적 지향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개선
- ④ 성소수자 인권 개선

II-4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사회참여 증진

○ 추진 배경

- 2008. 4. 11.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2009. 1. 10. 발효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도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통합 방안이 필요함.
- 아울러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사회복귀)과 정신장애인 등 자기보호 능력이 취약한 집단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마련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도 지속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위원회는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에서 ‘탈시설’과 ‘접근성’을 화두로 성과목표를 세운 바 있음. 이는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능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장애인에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수립된 것임. 이러한 환경은 현재 및 향후 5년간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장애인 인권 영역에서 조사구제와 함께 정책기능 강화를 통한 차별해소 및 사회통합, 안전하고 활발한 경제활동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사회참여’를 성과목표에 명시.

◆ 추진 방향

- ① 장애인 차별 해소와 권리구제 강화
- ②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와 접근성 보장을 위한 종합적 검토·개선
- ③ 거주시설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인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마련
- ④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강화

II-5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

○ 추진 배경

- 아동·청소년은 특별한 보호 대상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비해 아동과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
-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아동권리협약 제3조)을 명시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이면서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에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를 살피는 한편, 권리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사회 전반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보호 대상이자 권리 주체인 아동·청소년의 특수한 지위를 알리고, 그간 성과목표에서 조명되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주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그 외 법제도 개선 필요에 따라 이를 성과목표에 표현

◆ 추진 방향

- 아동인권관련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현황 점검과 모니터링
-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 아동·청소년 인권과제 발굴과 정책 개선

II-6

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개선

○ 추진 배경

- 수사와 재판, 형집행 등 형사사법은 그 과정에서 강제력과 물리력이 수반됨. 따라서 그 절차 중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특히 아동, 장애인, 이주민 등 사법약자의 경우에는 관행적, 제도적인 불공정성이나 인권침해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음
- 2021년부터 검찰과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전반적으로 재조정됨.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검·경 수사기관을 포함한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기본권 보장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높아짐
- 한편,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2015년),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2017) 등에서는 사형제 폐지,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형사사법절차 전반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고
- 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한 공권력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 성과목표를 설정함

◆ 추진 방향

-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 및 적극적 역할 수행
- 사법취약계층 인권보호와 형사사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사형제 폐지 등 인권조약기구 권고 이행 점검
- 그 외 집회 시위 관련 권리 등 자유권 분야의 전반적 보장·강화

II - 7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

○ 추진 배경

- ① 위원회는 최근 GANHRI 집행이사회 APF 대표,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 APF 부의장 등을 수입하며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인권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음
- ② 그러나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측면에서는 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제인권조약이 미가입 된 채로 있으며, 이에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및 ILO핵심협약에 대한 지속적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 ③ 한편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에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자유권·사회권 보장 강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인권의 연계, 기업과 인권, 환경과 인권 등에 관심 제고 등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역할과 기대도 높아질 전망이다

○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①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이 확립된 시점에서, 향후에는 국제사회의 국제인권규범 이행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음. 특히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적극적 가입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당 성과목표를 설정함

◆ 추진 방향

- ①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가입 촉진
- ② 국제인권기구의 심의 대응 및 이행 감시 강화
- ③ 국제인권이슈에 대한 활발한 논의 참여와 적극적 국내 소개

III-1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 추진 배경

- ① 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기능을 기본업무로 수행하며, 매년 1만 건 내외의 진정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 ② 인권침해 및 차별의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 조사가 강조되는 등 조사구제의 환경도 변화하는 상황임.
- ③ 향후에는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강화, 인권기준에 근거한 적극적 판단, 정책이나 교육과 연계된 근본적 문제해결 등을 통해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

○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① 진정사건 조사 뿐 아니라, 기획조사, 상담과 기초조사, 적극적인 조정제도 활용 등을 통해 조사구제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를 성과목표로 설정함

◆ 추진 방향

- ① 조사기법 개발과 전문교육을 통한 조사역량 강화
- ②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조사
- ③ 직권조사, 방문조사 등 기획조사 강화와 정책권고 활성화
- ④ 기초조사 안정화
- ⑤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⑥ 조사인력 확대 방안 마련

III-2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

○ 추진 배경

- 우리 사회에 인권가치를 확산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우리 위원회는 교육과 홍보 기능을 활용해 왔음. 향후에는 인권교육 등의 여건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환경적 측면의 기반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이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인권교육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는 홍보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모든 사람이 생애주기에 따른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교육 실행을 성과목표에 담고, 홍보 등을 통한 인권문화 확산을 포함하여 성과목표를 설정

◆ 추진 방향

- 생애주기에 따른 인권교육 강화
- 인권교육원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강화
-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강화

III-3

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거버넌스 강화

○ 추진 배경

-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위원회 설립의 주요한 기반이었으며 위원회는 설립 후 지속적으로 인권시민사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왔음. 또한 위원회는 관련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여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제고할 수 있었음
- 근래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군, 수사기관, 대학 등은 자체적인 인권옹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 기관들은 각 영역에서의 개별적 조사 구제 활동을 펼치는 한편, 각 권리의 보호에 대한 연구와 지원도 수행하고 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대두한 다양한 인권옹호자그룹과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인권옹호활동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강화, 정당성 강화 등 측면에서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절차적 차원에서의 의견수렴 이상으로, 업무의 계획과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시민사회 등 외부와 소통하며 일상적 협력 체계인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편, 그동안 적극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다양한 인권옹호기관과 협력적·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여 더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위원회의 중장기적 과제가 될 것임. 이에 해당 성과목표를 설정함

◆ 추진 방향

- ① 위원회 업무 계획, 실행, 평가 단계에서의 상시적 외부 협력 강화
- ② 지역단위 시민사회, 인권위원회, 인권업무 담당자 등 인권옹호자와의 교류·협력 활성화
- ③ 지자체, 민간영역 등 다양한 인권옹호기관의 역량강화 지원과 협력 활성화

III-4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역량 강화

○ 추진 배경

- 위원회는 오랜 기간 지역 인권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음. 그 결과 2019년 기준으로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인권조례가 모두 제정되었으며, 기초 지자체 226개 중 95개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었음. 15개 광역지자체에서 인권업무 전담자가 지정되고, 인권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 중이며, 14개 광역지자체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에 현재 시점에서 지역인권 보장체계는 형식 측면에서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에는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여 지역의 인권 강화를 실질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해짐. 각 지역에서 다양한 인권옹호활동 주체가 등장하고, 활동 방식의 다양성도 높아지고 있는바, 각 주체들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인권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권 사무소의 역량 강화 또한 추구해야 할 시기임

○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그간 위원회는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를 위하여 인권조례 제정 확산, 인권 사무소의 확충을 통한 지역에서의 인권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음. 향후에는 지역인권보장체계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인권사무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어 해당 성과목표를 설정함

◆ 추진 방향

- ④ 지역에서의 시민사회, 지역인권위원회, 인권업무 담당자 등 인권옹호자와의 교류·협력 활성화
- ④ 인권옹호자회의 활성화
- ④ 지자체 인권옹호활동 가이드라인 개발
- ④ 지역인권전문위원회 운영강화

III-5 군 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 추진 배경

- 그간 군 장병 인권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 사각지대로 지목되어 온 병영에서의 인권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됨. 또한 수평적 병영문화가 확산되고, 병영 내 장병 휴대폰 소지로 개방성·투명성이 개선되는 등 변화도 진행 중
- 근래 해군은 2019년 7월 장병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전담조직(해군 인권상담·구제센터)을 개소하였고, 2020년 4월 육군도 육군 법무실 인권과를 3개 과로 이루어진 육군인권존중센터로 확대 재편하는 등 각 군 차원의 인권 보호기구도 출범한 상황임
- 향후 위원회는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군인권보호관 도입 등을 통해 군인권보호 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 하고, 군의 자체적인 인권보호기구 등과 협력하여 군대 내 잔존하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군의 자체적인 인권 보호 노력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회는 진정 조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군 조직의 자율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군의 제도적·관습적 개선사항 발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군 인권 증진·보호 활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추진 중인 군 인권 보호활동의 체계를 완성하고 총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군 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를 성과 목표로 설정함

◆ 추진 방향

- ① 군인권 침해 예방과 조사구제 활성화 방안 마련
- ② 선제적인 군 인권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 ③ 군인권보호관 도입 추진

III-6 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

○ 추진 배경

- ① 인권상황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평가함으로써 인권보호·증진 활동의 현황과 과제를 도출하고, 합리적인 인권정책을 개발하고 보편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신뢰성 있는 통계 제공 필요성 제기(2017년 UPR 제3차 심의 최종결과)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제도, 정책, 사업을 입안할 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인권 침해로 인한 사회 갈등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① 넓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객관적인 근거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 이에 객관성과 보편성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적인 진단과 모니터링, 평가가 향후 위원회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여 해당 성과목표를 설정

◆ 추진 방향

- ① 체계적인 국가인권통계 시스템 구축과 관리
- ② 국가인권지표와 국가인권지수 개발
- ③ 주요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④ 인권영향평가체계 구축

III-7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

○ 추진 배경

- 2021년 위원회는 설립 20년을 맞이하게 됨. 이제 우리 사회는 위원회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높은 유능성을 발휘할 것을 기대할 것임. 그동안 내부 역량 강화는 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향후 위원회 구성원들이 우수한 업무 환경 속에서 전문성을 쌓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음
- 조직, 예산 등 위원회가 독립하여 원활하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 또한 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독립성의 강화는 한편으로 위원회의 자율적인 책임성 강화를 의미하기도 함. 현재 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나 감사원의 업무감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적정성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책임성의 기준은 향후 위원회가 요구하고 확보할 독립성과 비례하여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 취지

- 위원회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들을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성과목표로 상정

◆ 추진 방향

- ④ 직원교육, 인사, 조직, 정보화, 도서관 업무 등을 통한 위원회 전문성 및 성과 강화
- ④ 감사, 송무, 행정심판, 평가, 기록관리·정보공개 업무 등을 통한 자율적 책임성 강화
- ④ 조직, 예산 등 위원회 독립성 제도적 보장 등을 위한 위원회법 개정 및 개정 후속조치

05



인권증진행동전략

체계도



V. 체계도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 체계도

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명 : 모든 사람의 존엄, 평등, 자유가 보장되는 인권사회 실현

목표	I. 급변하는 인권환경과 지구적 재난·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	II.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	III.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할 강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난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②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③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인권 보호 ④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 ⑤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 ⑥ 스포츠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인권 강화 ⑦ 북한인권 개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및 혐오표현 대응 ② 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난민 인권보호 ③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 ④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⑤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 ⑥ 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개선 ⑦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②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 ③ 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거버넌스 강화 ④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역량 강화 ⑤ 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⑥ 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 ⑦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 체계도

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명 :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I.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II.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III.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IV. 인권의 확장 다원화
<p>①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p> <p>1.1.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및 비정규직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p> <p>1.2. 여성 노동인권 보호(가사노동, 초단시간노동, 감정노동 등 대응)</p> <p>1.3. 미래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를 대비한 노동인권 강화 방안 마련</p> <p>②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p> <p>2.1. 학교밖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p> <p>2.2. 학교 내 아동 인권 보호 방안 마련</p> <p>2.3. 아동의 놀 권리 보장</p> <p>2.4. 장애인 교육권 보장</p> <p>③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p> <p>3.1. 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권 강화</p> <p>3.2. 노인의료비 근본적 해결을 통한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p> <p>④ 주거 빈곤층의 주거권 보장 강화</p> <p>4.1. 비주택 주거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p> <p>4.2. 청년 및 1인가구 주거권 실태 점검 및 대안 마련</p> <p>4.3.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 권리 보호 강화</p> <p>⑤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p> <p>5.1. 생애사적 빈곤의 악순환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노인빈곤)</p> <p>5.2.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p> <p>5.3. SDGs 목표 1(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대응</p>	<p>⑥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p> <p>6.1.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p> <p>6.2.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p> <p>6.3.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p> <p>⑦ 장애인 등의 탈시설(사회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p> <p>7.1. 탈시설화 제도 종합적 검토·개선</p> <p>7.2. 장애인의 접근성(교통, 문화, 정보, 관광 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p> <p>7.3. 장애인 생존권 보장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화</p> <p>7.4.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효과와 한계 등 모니터링 강화</p> <p>⑧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p> <p>8.1. 사각지대 이주민(여성, 아동, 장기구금 외국인 등) 인권보호 강화</p> <p>8.2.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p> <p>8.3.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강화</p> <p>⑨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p> <p>9.1. 인권관련 법제도 종합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p> <p>9.2. 사법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저소득층) 인권 보호 방안 마련</p> <p>⑩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p> <p>10.1. 고용형태 등 고용차별시정 강화(진정사건 조사)</p> <p>10.2. 방문조사(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강화</p> <p>10.3.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마련</p>	<p>⑪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p> <p>11.1. 인권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인권교육 및 홍보 체계 구축</p> <p>11.2.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p> <p>11.3. 노동인권교육 강화</p> <p>⑫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p> <p>12.1.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p> <p>12.2. 국가·지방인권기구 협의체 운영 및 지원</p> <p>⑬ 시민사회 협력 강화</p> <p>13.1. 시민사회단체 연례회의 개최 등 협력 강화</p> <p>13.2.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p> <p>13.3.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p> <p>⑭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p> <p>14.1. 조약기구 대응 활동 강화</p> <p>14.2. 특별절차 협력 강화</p> <p>14.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사법부 협력 강화, 미가입 조약 대응 등)</p> <p>14.4.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및 노인인권 증진 전담 기구 역할 확립</p> <p>14.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인권모니터링</p>	<p>⑮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p> <p>15.1. 국내 북한이탈주민 이해와 인식 개선 정책 강화</p> <p>15.2. 국제공조와 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p> <p>⑯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p> <p>16.1.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p> <p>16.2. 인권경영 공감대 형성 및 확산</p> <p>16.3.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p> <p>⑰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p> <p>17.1. 새로운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연구 및 대응 방안 마련</p> <p>17.2. 정보인권 침해 규제 점검 및 개선 방</p> <p>⑱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p> <p>18.1. 저소득층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p> <p>18.2. 환경권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기반 강</p> <p>18.3. 긴급 재난 상황시 인권보호 방안 모</p> <p>18.4. 성(性)과 생식건강권 보장 강화</p> <p>⑲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p> <p>19.1.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및 정착</p> <p>19.2. 군영창제도 근본적 해결(방문조사 강 개선, 폐지 등)</p> <p>19.3. 여군 인권보호 강화</p> <p>19.4. 대체복무제도 종합적 검토(양심적 병</p>
<p>협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프로젝트팀 : 교육, 협력, 홍보, 정책·제도개선 통합, 차별금지법 대응)</p>			
<p>위원회 역량강화 (개헌 및 헌법기관화 추진 / 조직·인사·예산 자율성 강화 / 권고 이행 모니터링 체계 등 업무개선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판단지침 제시 / 직원 역량교육 내</p>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체계도

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명 :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한다.

I.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II.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III.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IV. 인권 공론화와 협력 강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회안전망 개선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권리구제	지역사회의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교육의 법적 보장	국내외 주요 인권의제에 능동적 대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2.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 4.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5. 인권평가제도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청소년·노인의 인권 증진 2.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3.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4. 이주민·재외동포 인권 보장 5.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2. 인권교육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 기능의 확대 3.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강화 4.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5.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2.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3.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4.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5.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 강화
북한인권 개선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진기반(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1.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2. 위원회 구성원의 인권전문성 강화

제3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2-2014) 체계도

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명 :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한다.

I.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II.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III.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IV.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V. 차별시정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권의 확대·증진 2. 자유권의 보장·강화 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 4. 군인권 증진과 병역제도 개선 5.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제도 기반구축 6. 인권지수 개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문화사회 이주민인권증진 2. 노인인권 향상 3. 아동·청소년 인권향상 4. 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조사 확대 2. 조사구제의 실효성 강화 3. 인권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4.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증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2. 인권교육 강화 및 확산 3. 인권 콘텐츠 개발 등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차별시정 강화 2. 성차별 시정 강화 3. 연령·학력 등으로 인한 개선 4.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 5. 소수자 인권 향상 6. 종교에 의한 차별 개선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1.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2. 정보인권 증진

제2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 체계도

전(vision)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명(Mission)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를 실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 전략목표

I.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II. 아동 노인 인권 향상	III.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IV.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	V.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
1-1.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강화 사형제 폐지 입법화	2-1. 학생 인권 개선 체벌금지 및 학교폭력 예방	3-1. 사회권 국제기준 준수 인프라 구축 사회권 지표 개발(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토대 구축)	4-1.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인권 친화적 다문화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5-1. 차별금지법 제정(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1-2. 표현의 자유 보장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 방안	2-2. 취약 계층 청소년 인권 개선 청소년 최저임금 보장	3-2. 빈곤 계층 인권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법제 개선	4-2.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이주노동자협약 가입	5-2. 고용에 있어서 차별 개 사회적 약자 고용차별 시정 방
1-3. 양심, 사상 및 종교의 자유 1-3. (변경)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강화 공공영역에서의 특정 종교행위 강요 개선	2-3. 스포츠 선수의 인권 보호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개선	3-3. 비정규직 인권 보호 3-3. (변경) 노동취약계층 인권개선	4-3.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금지 방안	5-3. 장애인차별 개선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
1-4. 정보인권 증진 개인정보 보호 방안	2-4. 노인 인권보호 노인보호시설 수용인 인권 개선	비정규직 차별개선 방안 마련	4-4. 다문화 가정의 아동 인권보장 인종·문화 소수자로서의 다문화 가정 아동 권리 보장	5-4.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5-5. 여성 인권 보호 여성인권 사각지대 개선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 북한 주민(북한내부)의 인권 상황 파악 ○ 재외 탈북자 인권 보호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적 사안 검토 ○ 새터민 인권 증진 방안 모색 ○ 북한인권 개선 촉구를 위한 국제협력망 구축			
위원회 설립 10주년 기획사업	① 국가인권위원회 10주년 심포지엄 개최 ② 국민 인권의식 조사 실시 ③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인권위 역량 강화) : 1. 인권위 독립성 강화, 2.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3.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제1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06~2008) 체계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명에 헌신한다.
 1.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권력을 감시한다.
 1.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
 1.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한다.

운영원칙

독립성(Independence), 전문성(Professionalism), 다양성(Diversity), 투명성(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의 의와 헌신(Courtesy and Commitment), 인권감수성(Human rights Sensitivity), 협력과 연대(Cooperation and Solidarity)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2. 국제적 수준의 인권 제도 및 관행의 구축

3. 권리 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5. 위원회의 역량

1.1. 사회권 관련 정책개발을 통한 인권영역의 확장
 1.1.1. 사회권 상황실태조사와 그 활용
 1.1.2. 인권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1.1.3. 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1.2. 차별시정기능 강화
 1.2.1. 차별금지법 제정
 1.2.2.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정립
 1.2.3. 조정기능 활성화 등 차별 피해자 구제방법의 다각화

1.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1.3.1. 맞춤형 인권 상담 체계 구축
 1.3.2. 소송 지원체계 구축
 1.3.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단체 간 협력 연계체계 촉진

2.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2.1.1. 정부의 인권NAP의 수립이행을 위한 자문 및 모니터링
 2.1.2.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법 실태조사 및 정비
 2.1.3.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의 연구
 2.1.4. 제도 및 관행의 정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

2.2.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2.2.1. 인권 의제 발굴 체계 확립
 2.2.2. 정책개발 및 대응능력 제고
 2.2.3. 주요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 의견개진

3.1.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3.1.1. 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한 체계 정비
 3.1.2.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 개발·실시

3.2. 인권침해 예방 및 현상성 강화
 3.2.1.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3.2.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
 3.2.3. 기획조사(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기능 강화
 3.2.4.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 강화
 3.2.5. 지역사무소 확산 및 역할 강화

3.3. 인권 친화적 권리구제 실현
 3.3.1.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실현
 3.3.2. 인권친화적인 조사구제 절차 및 기법 개발

4.1. 인권교육 기반 구축
 4.1.1.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4.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4.1.3. 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강화

4.2. 다양한 인권교육의 제도화 추진
 4.2.1.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의무화
 4.2.2. 공공부문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4.2.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교육 강화

4.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실행체계 구축
 4.3.1.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4.3.2. 사이버 인권교육 강화
 4.3.3.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5.1. 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5.1.1. 위원회 조직 및 운영체계 강화
 5.1.2.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강화
 5.1.3. 인권위원의 역할 강화
 5.1.4.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5.2.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5.2.1.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정보공유
 5.2.2.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5.2.3. 위원회 구성원의 직무 윤리 강화

5.3. 국내외적 협력체계 강화
 5.3.1.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 강화
 5.3.2. 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 강화
 5.3.3. 아시아지역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기여